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수사구조개혁” 발판으로

- 「수사권 조정」 마무리, 李廳長의 큰 역할 기대 -



이택순 경찰청장이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속적인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과 내부혁신에 주력해 온 경찰의 신뢰도가 사법부를 추월(本誌 1336호 보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이택순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민생치안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수순에 박차를 가할 뜻을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2월 22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강력범죄들이 국민들을 불안케 만들고 있는 것과 관련 「연쇄 강도 강간, 조직폭력, 집단폭력 등 강력사건의 빈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학기 개학과 5. 31 지방선거 등 시기적 치안특성을 감안해 오는 6월 1일까지를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기간으로

이 청장은 「수사구조 개혁은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미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수사구조 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제 신임 치안총수인 이 청장이 바톤

설정에 각종 사회 불안요소들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 왔던 수사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2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치안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명실공히 진정한 「책임치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검·경간의 수사구조개혁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은 「수사구조 개혁은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미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수사구조 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수사구조 개혁은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미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수사구조 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제 신임 치안총수인 이 청장이 바톤

을 이어 받았고, 허 청장 중도사퇴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수사구조 개혁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 주변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여론이다.

실로 허준영 경찰청장 재직기간중 경찰은 이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가져왔다.

지난 2005년 1월 취임한 허 청장은 역대 어느 치안총수보다 수사구조 개혁 문제에 대해 강한 추진력을 보여 왔으며, 특유의 독심을 바탕으로 「權檢責警」에서 「權警責警」이란 유명한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는 등 소신있는 치안총수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평이다.

허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의 운영,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발의(홍미영 의원, 이인기 의원),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내에서 조정안에 대한 당론화, 정부안 도출 등을 이끌어 냈다.

또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함께하는 검·경 공동주최 공청회를 비롯한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제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데 일조했던 것이다.

은 국민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사구조개혁 문제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경찰의 날과 2005년 경찰대학 졸업식에서도 「수사권 조정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구조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인 것이다.

더욱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2면 하단 참조)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이 정부 어느 기관 못지 않게 경찰을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도 대다수 찬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제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수사구조개혁 문제는 「이택순 號」의 어깨에 달려 있다.

전국의 120만 경우들과 수사구조 개혁을 여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허준영 선장」의 바톤을 이어 받은 「이택순 선장」의 강한 소신과 추진력을 갈구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경쟁과 협력」을 전제로

— 이상안 (경찰대 교수)

경·검간의 수사직무가 새로운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다양한 이론적 주장과 접근방법을 토대로 거의 합의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형소법 196조의 수사직무에 대한 경·검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아직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참으로 비탄스럽다. 전제주의도 식민제국주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검찰이 경찰을 종속적 지위에 두려하는가. 경찰과 검찰은 기관의 소속도 다르고 문제해결 능력도 다르다.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존중하는 것이 평등이고 「和而不同」의 기본정신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논거의 전혀 새로운 결론론을 3가지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첫째, 국가든 기업이든 어떤 「일」에 대하여는 「경쟁과 협력」이 없이는 그 「일」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경영학의 논리나 행정학의 논리들이 바로 이 「일」의 목표달성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형사절차에서도 경쟁과 협력은 규범의 리와 더불어 동시적으로 강조된다. 「적정법집행의 크기」, 「plea bargaining」 등이 바로 이 두 개념의 확장논리이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때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더 깊은 이념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는 자유·평등·경쟁·협력의 핵심개념(key concept)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원리다. 개인은 자유롭게 기본권을 향유하며 서로 경쟁하여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리고 또 이웃에게 배려나 배움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또한 기업은 또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노·사간에 협동한다. 기업의 경쟁으로 소비자는 질 좋고 값싼 서비스를 편익으로 향유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같은 논리로 협력한다.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많은 사립들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밭씨를 먹지 않고 간직한다. 수사직무의 구조도 국민에게 질 좋고 값싼 사법비용과 희생으로 권리의 침해 없이 사회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구조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간의 경쟁은 국민권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 경쟁이 보장되면 당연히 두 집단

간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수평적 협력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쟁을 보장하면서 경쟁기관에 대하여 지시·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경쟁기관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고 시장경제주의의 근본을 파괴시키는 자기당착적·세속탐욕적 사고로 비난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수사직무수행의 「공동체 통합적 접근」에서 보는 이유이다. 수사는 범인을 체포하여 범죄확인을 막는 그물망이고 네트워크이다. 넓고 촘촘한 그물망이 고기를 많이 잡는다. 「군사력」이 강하고 「경쟁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 사회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합력」이 이루어져야 3자간의 관계가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력」이 때로는 「군사력」을 선행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고 「경쟁력」이 「군사력」과 「통합력」을 뒷받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자 모두 갖출 수 없는 한계가 올 때 선순환적 기능은 필요한 것이다. 수사직무 구조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이다. 검찰의 형사절차에서도 경쟁과 협력은 규범의 리와 더불어 동시적으로 강조된다. 「적정법집행의 크기」, 「plea bargaining」 등이 바로 이 두 개념의 확장논리이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때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더 깊은 이념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수사권의 「독점」 구조를 「경쟁」 구조로 바꾸고 재량범위도 윤리적 재량까지도 엄격히 함으로써 책임력을 높이고 부패도 줄이는 기준을 구조개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사회체제가 기능적 연계를 유지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경쟁과 협력을 거부하는 집단은 당장은 독점에서 오는 당근을 누릴지 몰라도 발전차원에서는 낙후되고 만다. 체제가 기능적으로 작동할 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퇴화한다는 뜻이다. 경쟁과 협력이 근간이 된 형사법 196조로 바꾸어지길 기대한다.

세계화 추세에서도 결국 수사권은 경쟁과 협력체제로 바뀌게 된다고 볼 때 검찰의 기득권 주장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회봉사」, 「사회통합」 차원에서 철 회되어야 한다.



수사권이 고갈되거나 미진할 때 경찰의 수사력이 선행 또는 후행하면서 상호 범죄발생 허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발전의 요건인 목표나 가치에서 동질적이어서 하고 문제해결과 정보 처리 능력 면에서 이질적(heterogeneous)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범죄수사 그물망과 잡는 기술은 검찰거물망으로는 안 된다. 동질 수준의 이질적 경찰거물망이 협력적으로 구조되어야 한다.

3.1절 기념 북한 해방위한 시민집회 대회 성황

50여 안보단체 참여, 나라사랑 의지 표출

반핵반침 국민협의회가 주최하는 「3.1절 기념 북한해방을 위한 시민집회 대회」가 지난 3월 1일 재향경우회를 비롯한 50여 개 안보단체 회원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과 남산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일대에서 개최되어 애국시민들의 나라사랑 의지를 표출하는 자리가 되었다.

고 호소했고, 안응모 前 내무부 장관도 「3.1절선 이어받아야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통일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재향경우회는 이번 행사와 관련 구호일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 서울 및 특별회 회원 등 5백 여명이 참가하여 조국의 번영과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영원한 경찰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날 김현욱 반핵반침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전국 동포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고,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미를 되새겨 조국의 안녕과 자유민주 체제의 영원한 발전을 염원하자」

檢·警 搜查權 調整, 더 늦출 수는 없다!

- 19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협력적인 檢·警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시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관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번호사제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그릇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만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